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 확대 등〉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9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 확대 등〉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9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개 요	1
【엄태영의원안】 (국가공무원법)	1
【엄태영의원안】 (지방공무원법)	3
II .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5
2. 검토의견	8

I. 개 요

【엄태영의원안】(국가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엄태영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26.

다. 회부연월일 : 2024. 8.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

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엄태영의원안】(지방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엄태영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26.

다. 회부연월일 : 2024. 8.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려

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8호).

II. 검토의견¹⁾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하되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하고(안 제71조제2항제4호),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7호).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생략)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u>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	제71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u>

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조문 취지 및 개정 내용이 동일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구분	현행	개정안
	게 된 때 5. ~ 7. (생략) ③ ~ ⑤ (생략)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u>3년</u> 이내로 한다. 8. ~ 10. (생략)	<u>의 경우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의</u>----- -----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휴직 기간) ----- -----. 1. ~ 6. (현행과 같음) 7. ----- ----- -----<u>4년</u>-----. 8. ~ 10.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생략)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u>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제63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의</u>----- -----

구분	현행	개정안
	5. ~ 7. (생략) ③ ~ ⑤ (생략)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u>3년</u> 이내로 한다. 9. · 10. (생략)	----- -----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휴직기간)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u>4년</u>-----. 9. · 10.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제7호는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단위 : 명)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국가	전 체	8,093	8,372	9,154	9,971	11,491	12,573	14,181	13,709
	남 성 (비율)	1,528 (18.9%)	1,885 (22.5%)	2,652 (29.0%)	3,384 (33.9%)	4,483 (39.0%)	5,212 (41.5%)	6,524 (46.0%)	6,198 (45.2%)
	여 성 (비율)	6,565 (81.1%)	6,487 (77.5%)	6,502 (71.0%)	6,587 (66.1%)	7,008 (61.0%)	7,361 (58.5%)	7,657 (54.0%)	7,511 (54.8%)
지방	전 체	8,458	8,671	10,167	12,114	14,167	16,603	17,234	16,384
	남 성 (비율)	900 (10.6%)	1,338 (15.4%)	1,974 (19.4%)	2,709 (22.4%)	2,928 (20.7%)	3,780 (22.8%)	4,334 (25.1%)	3,873 (23.6%)
	여 성 (비율)	7,558 (89.4%)	7,333 (84.6%)	8,193 (80.6%)	9,405 (77.6%)	11,239 (79.3%)	12,823 (77.2%)	12,900 (74.9%)	12,511 (76.4%)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을 확대하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추가 확대하는 한편,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3년 대비 1년 연장하여 4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자녀돌봄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가정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제도 개선이라는 국한된 범위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에서 나아가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에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기준으로 0.72명²⁾ 수준에까지 이른 상황에서 이같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민간 부문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가 공공 부문의 양육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 부문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 현황>

(단위: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출산율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주: 2023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임.

‘육아’의 정의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이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넓게 정의되어 있고,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는 요건은 통상적인 관념상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휴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녀의 요건으로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을 확대함에 따라 그 실효성있는 활용을 위해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추가 확대하는 것은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와 관계에서 일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일부 확대하는 등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봄.

<가족돌봄휴직 제도>

구분	공무원	민간근로자
대상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보기 위한 경우
기간	회당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최대 3년)	연간 최장 90일(매년 사용 가능)

구분	공무원	민간근로자
분할 사용	분할 사용 가능	분할 사용 가능. 단, 회당 30일 이상
수당 (급여)	무급	무급(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시 유급 가능)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 • 공무원임용규칙 제90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자료: 인사혁신처

참고로, 민간 부문의 양육 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2024년 9월 26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 연령 및 학령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변경하였음.

<육아휴직제도>

구분	공무원	민간근로자
대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11.5. 국가공무원법 개정)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14.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3년	자녀 1명당 최대 1년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24.9.26. 본회의 의결)
분할 사용	횟수 제한 없음	출생 후에는 2회로 제한 ※ 3회로 확대(’24.9.26. 본회의 의결)
수당 (급여)	월봉급액의 80%, 최초 1년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 시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 첫 6개월 월봉급액의 100% 지급 (상한 200-450만원), 7개월째 부터는 80% 지급(상한 150만원)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18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시 각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450만원), 7개월째 부터는 80% 지급(상한 150만원)
유사 제도	가족돌봄휴직 최대 3년(회당 1년 이내) *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 연 90일 *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료: 인사혁신처

<OECD 국가 민간 육아휴직제도 현황>

국가	자녀연령한(세)	휴직기간
호주	2	52주 (모성휴가와 통합 운영)
오스트리아	2	12개월(소득비례급여)
벨기에	12	부모 1인, 자녀 1인당 4개월씩
캐나다	1 (1.5세까지 연장 가능)	연방정부 기준 35주
체코	3	자녀 3세 생일까지
덴마크		32주
핀란드	3	158일(약 26주)
프랑스	3	첫 번째 휴직 최대 1년, 자녀수에 따라 연장 (자녀1명: 2회 연장, 자녀 3세 생일까지 / 자녀2명: 2회 연장, 유치원 입학일까지 / 자녀3명: 5회 연장, 자녀 6세 생일까지)

국가	자녀연령 한(세)	휴직기간
독일	8	3년
그리스	8	4개월
아이슬랜드	2	12개월(6개월 엄마(이때 모성휴가로 사용), 6개월 아빠 사용)
아일랜드	12	26주
이탈리아	12	6개월(부모 모두 사용할 경우 10개월 넘지 못함)
일본	1	자녀 연령 12개월까지(부모 모두 사용하면 14개월까지 연장)
한국	8	12개월
룩셈부르크	5	4-6개월
네덜란드	8	주간근로시간의 26배(약 988시간, 26주, 6개월)
뉴질랜드	1	12개월
노르웨이	3	49-59주(18주는 엄마, 15주는 아빠가 사용, 남은 16-18주는 공동 사용, 모성휴가와 통합운영)
폴란드	6	32주
포르투갈	6	최초육아휴직: : 부모 중 한 사람만 사용시 20-150일, 부모 모두 사용시 150-180일 사용 가능 추가육아휴직: 3개월
스페인	3	자녀 3세까지 - 1년까지 고용보장 휴직 사용 가능(1년 이후 취업 분야에 따라 고용보장 조건 상이함)
스웨덴	12	480일(90일은 부모 각각 사용, 모성휴가 포함)
영국	18	50주(모성휴가 52주 중 의무모성휴가기간 2주 제외)
미국	(12개월) ¹⁾	12주(모성휴가와 통합)

주: 1) 연방가족의료휴가법(federal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에서는 출산, 12개월 영유아 돌봄, 아픈 자녀와 가족 돌봄, 근로자 자신의 질병 사유로 이용하는 무급휴가로 내용상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육아휴직급여 및 가족돌봄휴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23.12., p. 87., 각주 40].

자료: 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육아휴직급여 및 가족돌봄휴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23.12., pp. 50~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100일을 주도록 하는 한편,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였으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 확대의 경우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여 일·가정 양립과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휴직 외에 직무와 병행할 수 있는 대체적 제도의 활성화,³⁾ 직무와 병행이 어려운 양육 연령 및 학령에 대한 검토, 민간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사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4.7월 시행)으로 육아시간(1일 2시간) 사용 대상 자녀의 범위를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가능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함.

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

장애·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인한 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제도 외에 별도로 마련된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자녀의 경우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 불과한 민간과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가 재정 소요, 대체인력 충원 등 정부조직 및 정원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일부 민간 대기업의 경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것이 ‘육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현행 규정상 가족돌봄휴직과의 중복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일반 근로자와의 양육환경 격차가 심화되어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